

# 제휴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약관

이 약관은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합니다)과 이용기관 (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가상계좌 서비스의 원활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 제1조 (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모든 제휴 가상계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은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 대상계좌의 거래약관과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업무규약 및 세부 처리 지침 등의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제휴 가상계좌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이용자”가 자금의 수납 또는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거나 “이용자”의 고객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가상계좌”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은행”이 “이용자”의 계좌를 모계좌로 하여 “이용자”에게 부여한 “은행의” 확인코드를 말합니다.
- ③ “모계좌”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이 당행에 개설한 실명확인 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로, 가상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최종 집금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 ④ “수수료”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은행”에 납부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합니다.
- ⑤ “중계기관”이란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서 거래 명세의 송신 및 수신을 중계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⑥ “전용선”이란 “은행”과 “이용자”를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한 회선을 말합니다.
- ⑦ “실시간 처리방식”이란 거래 발생과 동시에 거래내역 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⑧ “일괄 처리방식”이란 거래 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처리할 거래내역 정보를 모아 두었다가 일괄 (Batch)로 처리 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 ① 입금서비스: “이용자”의 고객이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제공 받은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그 자금을 “이용자”의 지정된 모계좌로 입금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출금서비스: “이용자”의 고객이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가상계좌가 등록된 카드를 이용하여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 출금 또는 계좌 이체를 하면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4조 (업무처리 및 시스템)

- ① “이용자”는 가상계좌 거래내역 등의 정보 이용을 아래 각 호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실시간 처리방식 또는 일괄 처리방식 중 “이용자”와 “은행”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1. 기업인터넷뱅킹: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 내 가상계좌 메뉴를 통해 제공받아 이용
  2. 중계기관: 중계기관을 통하여 전문으로 제공받아 “이용자”의 전산시스템 내에서 이용
  3. 전용선: “은행”과 “이용자”간 설치한 전용선을 통하여 전문을 제공받아 “이용자”의 전산시스템 내에서 이용

- ② “이용자”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회선, 단말기 및 부대기기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 ③ 전산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의 정함이 필요한 때에는 “이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 ④ “이용자”와 “은행”은 각자의 전산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시 귀책 사유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집니다.
- ⑤ “은행”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융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 대한 금융업무를 수행하기로 합니다.

## 제 5 조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은행”的 영업시간 중으로 합니다. 다만,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용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 6 조 (거래 내용의 확인)

- ① “은행”과 “이용자”는 가상계좌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제 ①항에 의한 처리 결과의 확인 사항 중 “은행” 이외의 타금융기관에 의한 거래 내용은 금융결제원의 처리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 7 조 (이용계약의 체결, 서비스 추가 및 변경)

“이용자”는 「제휴 가상계좌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와 「가상계좌 이용 확인서」를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은행”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한 때에 한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습니다.

## 제 8조 (계좌의 지정)

- ① “이용자”는 “은행”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계좌와 수수료계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② 모계좌 또는 수수료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이용자”는 “은행”에서 정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이 전산 등록을 마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 9조 (입금서비스 처리)

-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가 미리 정한 입금 모계좌로 이체하기로 합니다.
- ②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상호 연결된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가상계좌 중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거래명세를 전송합니다.
- ③ 제 ②항 이외의 경우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별도 서비스 채널(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거래 명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④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자원은 현금, 계좌간이체, 자기앞수표로 한정합니다.
- ⑤ 자기앞수표로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입금 모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표가 추심 완료되어 현금화된 후 지급 가능합니다.
- ⑥ “은행”이 수납한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 될 경우에 “이용자”는 즉시 해당금액을 가상계좌 모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용자”가 해당 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다른 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 예금 청구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제 10조 (출금서비스 처리)

- ① “이용자”의 고객이 “이용자”가 발행한 가상계좌가 등록된 제휴카드로 금융결제원 CD 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과 제휴된 자동화기기 전문회사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 출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동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연결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확인한 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송합니다.
- ② “은행”은 제 ①항에서 “이용자”로부터 거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 13조 ①항 각 호의 사유로 이를 실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의 취소 전문을 전송하기로 합니다.
- ③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거래 승인 후 “이용자”의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을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가 미리 정한 모계좌에서 출금하기로 합니다.

## 제 11조 (자동이체 처리)

- ① 가상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처리는 “은행”的 납부자자동이체약관 제 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② 자동이체 처리 가능시간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기로 합니다.

## 제 12조 (수수료)

- ①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은행”에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 ②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은행”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②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적용 기한은 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도래하는 6월말, 12월말 중 선택 적용하기로 하며, 이때 “은행”은 “이용자”에게 별도 협의한 수수료 적용 기한이 종료되기 1개월 전 개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④ 별도 협의한 수수료 적용 기한이 종료 된 경우 그 적용 기일 익일부터는 제 ①항에서 정한 [별표]의 수수료로 자동 환원되며,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승인

을 득한 경우에는 “은행”은 별도의 신청서 등을 징구 하지 않고 “은행”이 정하는 기한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⑤ “은행”은 매월 1일~말일까지 발생하는 이용수수료 금액을 익월 10일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이용자”가 지정한 수수료 출금계좌에서 별도 거래 지시 없이 출금하여 이용수수료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⑥ “이용자”는 제 ⑤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효력 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이용수수료를 효력 상실일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은행”은 제 ⑤항의 절차와 동일하게 출금하기로 합니다

### 제 13조 (서비스 제한)

- ① “은행”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1. 모계좌가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되는 등 계좌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경우
  2. 모계좌에 대하여 거래일에 예금 잔액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3. 모계좌에 대하여 법적 지급제한 및 사고신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4. 모계좌의 지급 가능 금액이 거래 요청 금액 보다 부족한 경우

### 제 14조 (계약의 해지 및 정지)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통지하여 계약을 해지 및 정지 할 수 있습니다. 통지내용에는 해지 사유 및 통지 후 1개월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1개월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자”가 계약의 해지 및 정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별통지 후 “은행”은 1개월동안 “이용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거나

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발생 가능성이 급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해지 및 정지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법규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였거나 본 서비스를 범죄 수익의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이용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재산보전 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채권 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 어음교환소의 거래 정지 처분, 회사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3.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가상계좌를 다단계, 포인트업, 선불충전업, 가상화폐 거래, 상품권 판매 용도로 사용하는 등 신청서에 기재한 가상계좌 이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 가상계좌에 대한 사고신고, 유사수신 제보, 수사당국의 계좌조회 요청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6. 가상계좌 입금고객의 빈번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7. “이용자”가 가상계좌를 제 3자에게 할당하여 관리 대행 (재판매)하는 경우
  8. “이용자”가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일정기간 (2년 이상) 미사용한 경우
- ②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은행”이 정한 납부 기일에 2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필요 시 “이용자”的 서비스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이상 발견 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후 해당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 경우 서비스를 정지한 이후 사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와 “은행”은 제 ①항 이외의 이유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서비스를 해지 및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제 15 조 (비밀유지)

① “은행”과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 사항을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 16 조 (의무사항)

① “은행”과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이용자”의 고객에게 부여 시 가상계좌는 “이용자” 소유의 계좌이며 ‘고객 본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가상계좌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이용 용도로만 가상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은행”이 사용현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17 조 (손해배상 및 면책)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한 “은행”的 손해배상 및 면책은 “은행”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 18 조 (분쟁의 해결)

① “이용자”는 동 업무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해 “은행”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위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 20 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이 약관의 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제 21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은행”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이 제 ①항 및 제 ②항에 따라 통지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 22조 (약관의 적용 순서)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제 23조 (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의 발생 시에는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어느 당사자의 귀책에 기하지 아니한 설비, 기술, 법규상의 문제로 인해 본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 개시 시기를 연기할 수 있기로 합니다.

##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구분	수수료	비고
발급수수료	100원 / 건	발급 시 징수
입금수수료	300원 / 건	입금 시 징수
출금수수료	400원 / 건	송금 수수료 별도
기본수수료 (최저수수료)	50,000원 / 월	해당 월 입금수수료 합이 기본수수료 금액 미만시 기본 수수료 징수
(신한 다모아서비스) 다모아 이용료	150원 / 건	입금 시 징수

[별지] 「가상계좌 이용 확인서」

## 가상계좌 이용 확인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가상계좌 이용 전 점검 내용을 확인 하오니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대상: 가상계좌를 신규 또는 추가 발급 요청하는 고객)

■ 고객기재사항: 아래 점검 내용을 확인 후 [ ]에 “

구분	점검 내용	확인
공통사항	① 가상계좌는 발급 기관 소유의 계좌이며 '고객 본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input type="checkbox"/> ]
	② 가상계좌를 이용함에 있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u>가상계좌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거나 가상계좌 입금고객의 반복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서비스를 즉시 해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u>	[ <input type="checkbox"/> ]
이용내용	③ 가상계좌는 이용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 만큼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input type="checkbox"/> ]
	④ 신청서에 기재한 가상계좌 이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가상계좌를 사용할 경우 서비스가 정지 또는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input type="checkbox"/> ]
	⑤ 발급 받은 가상계좌는 제 3자에게 알당하여 관리 대행 (재판매) 할 수 없습니다.	[ <input type="checkbox"/> ]
사후 관리	⑥ 은행은 신청서에 기재된 이용 용도로의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해당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input type="checkbox"/> ]
	⑦ 가상계좌 발급 후 일정 기간(2년 이상) 미사용 한 경우 서비스가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input type="checkbox"/> ]
본 확인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틀림없이 기재하였습니다.		
20 . . . 고객명: _____ (인/서명)		